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73
----------	-------

발의연월일 : 2026. 4. 8.

발 의 자 : 엄태영·박덕흠·배준영  
김상훈·진종오·이만희  
이종배·이상희·서천호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인구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인구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인구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인구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인구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인구부장관”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인구부장관의 행위 또는 인구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생략)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인구부장관-----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인구부장관-----  
-----  
-----.

⑥ (현행과 같음)